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1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3일
발 의 자: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도문열, 민병주, 박춘선, 박환희, 신복자, 아이수루, 옥재은,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이병윤, 이상욱, 임춘대, 최민규, 한·신,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9명)

1. 제안이유

-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의 운행차 수시점검 부분이 2023년 6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운행차의 소음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 (안 제14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으로, “점검할 수 있다”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 명령) ① 시장은 <u>다음</u>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u>점검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14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 명령) ① ----- <u>법 제36조에 따라</u> <u>다음</u> ----- ----- <u>수시로</u> <u>점검하여야 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3100400000002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남창진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3.10.04.

회신일 : 2023.10.10.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수시점검 부분이 2023년 6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안 제14조제1항)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